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평가와 전망

유한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대외협력홍보팀장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7월 출범하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제2기라 함은 편의상 붙인 표현인데 제1기 위원회는 2000년 10월 17일 출범하여 2002년 9월 16일 조사 활동을 종료하였다. 그런데 의문사진상규명을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으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의문사법)이 개정되어 다시 최장 1년을 시한으로 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난 1기 활동을 개괄해서 평가하고 2기 위원회 현황과 향후 전망을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개정 의문사법에 따라 2기 활동 재개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0년 10월 17일 대통령 소속으로 출범하였다. 위원회는 80건의 의문사 사건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받았고 삼청교육대 관련 사망사건 등 5건을 조사할 것을 직권으로 결정하였다. 그 후 각하된 2건의 사건을 제외하고 83건의 사건을 2001년 1월부터 2002년 9월 16일까지 조사하였다.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5개 기관의 파견조사관과 시민사회운동단체 경력을 가진 민간조사관이 공동으로 조사활동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파견조사관과 민간조사관 사이에 마찰도 있었고 여러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모두 '국민과 함께 역사의 진실을 밝힌다'는 사명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각 사건을 민주화운동 과

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거나, 기각하였다. 또 의문사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또는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밝히지 못한 경우는 진상규명불능으로 결정하였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여야 하고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하여야 하는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인정'되었기 때문에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어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기각되었다. 또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은 있어도 공권력에 의한 사망이 아닌 경우도 기각되었다. 결국 83건의 사건 중 인정된 사건은 19건, 기각된 사건은 33건, 진상규명불능으로 결정된 사건은 30건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운동 과정에 공권력 행사로 사망해야 의문사로 인정
진상이 밝혀진 주요 사건 사례를 보면, 먼저 운동권 학생을 강제징집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녹화사업의 진상을 규명하였다. 80년대 초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 징집하여 가혹행위를 하거나 프락치 활동을 강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한영현, 한희철, 이운성 씨 등이 사망하였음을 밝혀냈다.

73년 사망한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의 경우 당시 중앙정보부는 간첩조직망을 자백하지 않기 위해 투신 자살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위원회 조사결과 고문 등 가혹행위로 사망하였으며 간첩사건도 조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 75년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 당한 가혹행위로 악화된 질병을 치료받지 못해 옥중사망한

장석구 사건을 조사 하면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이 중앙정보부 등에 의해 조작된 사건임을 밝혀냈다.

81년 삼청교육의 인권침해에 항의하다가 진압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전정배 사건과 84년 청송감호소에서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다가 교도관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박영두 사건을 통하여 삼청교육 등의 인권유린과 피해실상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였다.

권위주의 정권의 묵인 또는 방조 하에 이뤄진 구사대 폭력으로 노동자들이 희생되었음을 문용섭, 오범근 사건 조사를 통해 밝혀냈다. 김준배 사건 조사에서는 경찰 등 정보기관이 불법적 미행과 감시, 프락치 공작을 통해 학생운동을 탄압해 왔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허원근 사건 등 군에서의 의문사 조사를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은폐되어 왔던 군 의문사의 진상을 일부 확인하기도 하였다.



2002년 11월 국회 앞에서 있었던 시민사회단체의 의문사법 개정 촉구 자전거 시위

권위주의 통치시기의 인권 침해 밝혀

이처럼 위원회의 활동은 부분적이거나 권위주의 통치시기의 인권침해 실상을 밝혀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 잡고 국가가 직접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실추된 국가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1기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의문사진상규명 계속'과 '조사권한 강화'를 요구하였고, 지난해 12월에 개정법안이 공포되었다. 개정법안은 조사결과 진상규명불능과 기각으로 결정된 사건 중 명백히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건 중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위원 전원이 인정한 사건은 최장 1년 동안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징적인 차원에서 위원회의 자료 및 물건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은 그 이유를 소명하

도록 하였고 통신사실 조회 권한도 신설되었다.

개정 의문사법에 따라 지난 해 7월 1일에 출범한 2기 위원회는 1기 때 진상규명불능결정이 내려졌던 30건의 사건과 이의제기된 사건 중 14건을 조사재개하기로 결정하고 금년 6월까지를 시한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조사활동 외에도 의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사인확인제도 개혁입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기 위원회도 1기 위원회 출범 초기부터 지적되어 온 권한 미약, 한정된 조사 기간,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위원회는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사건만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진실규명을 위해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또 다수의 의문사 사건이 공소시

효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책임도 회피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시 의문사법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조사대상 범위도 1948년 정부수립 이후에 일어난 의문사 사건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지난 11월 22일에는 오세훈 의원을 비롯한 61명의 의원이 의문사법 개정을 발의하였다.

의문사법의 한계를 국민의 성원으로 극복해야

위원회는 현행법에 정해진 조사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진상규명을 이루어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해내는 힘은 결국 진상규명을 통해 올바른 교훈을 찾으려는 우리 사회 공동의 노력과 이 작업에 대한 국민의 성원이다. 의문사진상규명과 과거청산의 성패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